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 | |
|------------|------|
| 의 안 번 호 | 3542 |
|------------|------|

2026년 3월 1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자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6년 3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 제안이유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준공기한이 변경됨에 따

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공기한에 맞게 기본계획상 사업기간
을 변경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개요

- 건 명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197,400 m^2 , 입출고선 4.9 km , 창동차량기지 철거
- 공사기간 : '18. 12. ~ '27. 6.
- 총사업비 : 7,078억원

2) 추진경위

- '13.12.19. :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 '16.12.12. : 기본계획 변경(차량기지 위치) 고시(국토부)
- '18. 9. 5. : 차량기지 사업계획승인 고시(국토부)
- '18.12.31. : 공사착공
- '26. 1. : 마무리공사 중

3) 사업기간 변경(규모변경 없음)

○ 당 초 : 2010년 ~ 2024년

○ 변 경 : 2010년 ~ 2027년

4) 변경사유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준공기한과 동일하게 변경

○ 용지보상 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공정순연

| 구 분 | 준 공 기 한 | | 비 고 |
|-----|-----------------------|-----------------------|-----|
| | 당 초 | 변 경 | |
| 1공구 | '18.12.31 ~ '24.10.29 | '18.12.31 ~ '26.02.28 | |
| 2공구 | '18.12.31 ~ '26.02.26 | '18.12.31 ~ '27.06.30 | |

5)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4호선 연장으로 기존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로 이전하는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이하 “차량기지 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이상 연장되면서 「도시철도법」 제6조1)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 등에 따라 동 사업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시행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 구 분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
|------|----------------------------------------|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
| 규 모 | 차량기지 197,400㎡, 입출고선 4.9km, 창동차량기지 철거 등 |
| 사업기간 | 2018.12 ~ 2027.6 |
| 총사업비 | 7,078억원 |

1)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생략>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2)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나. 검토의견

- 차량기지 사업은 '13년 12월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었고 '16년 12월 차량기지 위치 등의 변경³⁾에 따라 한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8년 9월 사업계획 승인·고시 후 '18년 12월 착공하여 '27년 6월 완공('25년 말 기준 공정률 약 87.6%)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
- 동 의견청취안은 당초 '13년 기본계획과 '16년 기본계획 변경시 적용되었던 사업기간('10~'19년)이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용지 보상 및 공사지연 등으로 '10~'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추진경위 붙임 참조)

※ 사업기간 적용현황

| 구 분 | '13년 기본계획 | '16년 기본계획 변경 | '18~'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9회 | '24년 12월 이후 사업계획 변경 2회 | 동 의견청취안 |
|------|----------------|--------------------|-----------------------------------------|------------------------------|----------------|
| 사업기간 | 2010~ 2019년 | 2010~ 2019년 | 사업계획승인일 ⁵⁾ ~ 2024년 12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년 12월 | 2010~ 2027년 |

주) '14년 7월 「도시철도법」 전부개정⁶⁾ 시행 이후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신설

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6호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 철도차량기지(변경) >

○ 위치

- (당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111-2번지 일원
- (변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4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187,591㎡, (변경) 197,400㎡

○ 인입선 연장 : (당초) 3.1km, (변경) 4.9km

4) 일반적인 도시철도 사업의 절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 기본계획 승인 →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계획 승인 → 공사 → 준공

5) 차량기지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 : '18. 9. 5

- 동 사업은 '18년 사업계획 승인·고시 이후에도 사업면적 변경,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신설 등 총 11번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차량기지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기간의 차이가 1년 이상 발생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 결과에서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 변경(연장)이 타당하다는 의견⁷⁾이 제출되었음

- 다만 '13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관련법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었으나 '14년 7월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이후 '16년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차량기지 위치 변경(진접읍 금곡리 산 111-2번지 → 산 40-4번지 일원) 등을 한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계획을 11번 변경할 동안 기본계획을 이에 맞춰 변경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 차량기지 사업의 공사가 상당기간 진행되어 '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행정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이

6) 도시철도법[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전부개정, 2014. 7. 8., 시행]

-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7)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추진 계획(도시철도설계부-749호, '26.1.27.)

기본계획 변경(안) 사전협의를 위한 회신(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268호, '26.2.3.)

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동 사업 외에 위례선의 경우도 '20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⁸⁾ 시점의 사업기간은 '19~24년이나 '25년 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⁹⁾에서는 '19~25년이며, 현재 공정상 완공¹⁰⁾은 '26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기본계획 사업기간과 실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기본계획의 사업기간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한편 실제 공사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연장될 경우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계속 변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0-7호('20.11.3.)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20호('25.11.12.)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

10)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

※ 참고 : 추진경위

- '13.12.19. :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고시
- '16.12.12. :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차량기지 위치) 고시
- '18. 9. 5. : 국토부 사업계획승인 고시
- '18.12.31. : 공사착공
- '19. 6. 7. : 市 사업계획 변경(차량기지 시설면적 변경) 고시
- '20. 3.25. : 市 사업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차량기지) 면적, 인입선 연장 정정) 고시
- '20. 7.14. : 市 사업계획 변경(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및 부번 변경) 고시
- '20. 7.17. : 市 사업계획 변경(오기 및 오류 정정) 고시
- '21. 2.18.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업계획 변경(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신설) 고시
- '21. 9.27. : 市 사업계획 변경(추가 수용 및 사용필지 등 반영, 당초 누락 필지 반영, 현황측량 반영, 지장물 조서 추가) 고시
- '22. 9. 2. : 市 사업계획 변경(추가 수용 및 사용필지 등 반영) 고시
- '23. 6. 8. : 市 사업계획 변경(우회터널 신설, 현업사무실 위치변경, 기존 도로 매입) 고시
- '23.11.20. : 市 사업계획 변경(편입 면적 오기 정정, 추가 수용 필지 반영 등) 고시
- '24.12.20. : 市 사업계획 변경(수용 및 추가 사용(구분 지상권) 필지 반영) 고시
- '25.10.28. : 市 사업계획 변경(우회터널(신설 및 기존도로 매입), 위치 및 부지 변경(현업사무실 및 옥외자재적치장 등) 고시
- '26. 1. : 공사 중

5. 질의 및 답변요지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 | |
|----------|------|
| 의안 번호 | 3542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준공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공기한에 맞게 기본계획상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건 명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 규 모 : 차량기지 197,400 m^2 , 입출고선 4.9 km , 창동차량기지 철거
- 공사기간 : '18. 12. ~ '27. 6.
- 총사업비 : 7,078억원

나. 추진경위

- '13.12.19. :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 '16.12.12. : 기본계획 변경(차량기지 위치) 고시(국토부)
- '18. 9. 5. : 차량기지 사업계획승인 고시(국토부)
- '18.12.31. : 공사착공
- '26. 1. : 마무리공사 중

다. 사업기간 변경(규모변경 없음)

○ 당 초 : 2010년 ~ 2024년

○ 변 경 : 2010년 ~ 2027년

라. 변경사유 :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준공기한과 동일하게 변경

○ 용지보상 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공정순연

| 구 분 | 준 공 기 한 | | 비 고 |
|-----|-----------------------|-----------------------|-----|
| | 당 초 | 변 경 | |
| 1공구 | '18.12.31 ~ '24.10.29 | '18.12.31 ~ '26.02.28 | |
| 2공구 | '18.12.31 ~ '26.02.26 | '18.12.31 ~ '27.06.30 | |

마.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계부 함대용 (☎6438 - 2533)

도시철도토목부 김봉성 (☎6438 - 2624)